

의안번호	2204983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계번호	24F459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및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,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2조 6,708억원, 2028년 2조 9,693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조 4,628억원(연평균 2조 8,2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14,088	-14,976	-15,859	-44,923	-14,974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6,846	-7,188	-7,504	-21,538	-7,179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5,774	-6,063	-6,330	-22,709	-7,570
계	-26,708	-28,227	-29,693	-84,628	-28,209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 -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 -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8개로 확대	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	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- 신성장·원천기술 공제율(%): (현행) 중소기업 12, 중견기업 6, 대기업 3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25, 중견기업 20, 대기업 15 - 국가전략기술 공제율(%): (현행) 중소기업 25, 중견 및 대기업 15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30, 중견 및 대기업 25	
--	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단,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 - 2025~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28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28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
-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 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및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시 해당 기술의 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이 비례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 분야의 범위와 해당 분야의 향후 R&D 지출액,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－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
－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
※ ‘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’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 ²⁾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 ¹⁾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‘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’로 계산함

□ (공제실적) 2023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4조 6,302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 수준

○ 2023년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(법인세)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852	2,886	6,023	23,76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66	255	8,971	9,492
국가전략기술 R&D	32	9	11,927	11,968
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으로 2023년 대비 34.6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 -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194	206	218
중견기업	186	197	209
대기업	6,530	6,941	7,351
계	6,910	7,345	7,778
<국가전략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24	25	26
중견기업	7	7	8
대기업	8,682	9,229	9,773
계	8,712	9,261	9,807
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 전망(t-1)	6.0	6.3	5.9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-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5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938	997	1,056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 (B)	6,910	7,345	7,778
	차이 (B-A)	5,971	6,347	6,722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 (A)	595	633	670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(B)	8,712	9,261	9,807
	차이 (B-A)	8,117	8,628	9,13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는 2026년 1조 4,088억원, 2028년 1조 5,859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조 4,923억원(연평균 1조 4,9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14,088	-14,976	-15,859	-44,923	-14,974

나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공제율 인상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
[표 7] 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3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□ (공제실적)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1조 9,763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한편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2조 799억원, 2024년(잠정치) 1조 8,671억원 수준

[표 8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국가전략기술	8	10	8,233	8,251
계	4,455	1,496	13,812	19,76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9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
(단위: 억원, %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37	38	40
중견기업	13	13	14
대기업	4	5	5
계	54	57	59
<국가전략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11	11	12
중견기업	13	13	14
대기업	10,680	11,214	11,708
계	10,703	11,239	11,733
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t-1)	5.8	5.0	4.4

주: 설비투자 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(%):
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3, 중견기업 6, 중소기업 12
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15, 중견기업 15, 중소기업 25
 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10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2,146	2,253	2,353
	개정안(B)	10,703	11,239	11,733
	차이 (C=A-B)	-8,557	-8,985	-9,381
세수효과 ($C \times [1-0.2]^{1)}$)		-6,846	-7,188	-7,504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□ (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) 개정안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인상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적용기한 연장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인상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신성장·원천기술 공제율(%): 중소기업 12 → 25, 중견기업 6 → 20, 대기업 3 → 15
 - 국가전략기술 공제율(%): 중소기업 25 → 30, 중견기업 15 → 25, 대기업 15 → 25
 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11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신성장· 원천기술	현행 공제율(A)	54	57	59
	개정안 공제율(B)	141	148	154
	차이 (C=A-B)	-87	-91	-95
국가전략 기술	현행 공제율(A)	10,703	11,239	11,733
	개정안 공제율(B)	17,834	18,874	19,704
	차이 (C=A-B)	-7,218	-7,579	-7,912
세수효과 ($C \times [1-0.2]^{1)}$)		-5,774	-6,063	-6,330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1조 2,620억원, 2028년 1조 3,834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조 9,705억원(연평균 1조 3,23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6,846	-7,188	-7,504	-21,538	-7,179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5,774	-6,063	-6,330	-22,709	-7,570
계	-12,620	-13,251	-13,834	-39,705	-13,235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